



진정/민원 제기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독립적 단체로서 성별, 인종, 장애, 연령 등에 근거한 불법적 차별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III호에 규정된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제기된 진정/민원들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는 기구입니다.

호주인권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 민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 차별:** 성희롱을 비롯하여, 성별, 성 정체성, 중성, 임신, 결혼 및 연애상황, 모유수유, 가족관련사, 성적 성향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별.
- **장애 차별:** 육체적, 지적, 감각기능적, 학습 및 정신적 장애; 질병 또는 병; 의학적 질환; 직장에서 입은 부상; 과거, 현재, 미래의 장애상태; 또는 장애인과의 유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별.
- **인종 차별:**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및 출신 민족, 이민자 등에 대한 혐오 및 차별.
- **연령 차별:** 지나치게 어리거나 고령인 연령과 관련한 차별.
-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 III호 위반 차별:** 종교, 형사기록, 노조활동, 정치적 견해, 사회적 배경 등과 관련한 차별.
- **인권:** 호주연방정부 혹은 이를 대신한 단체들의 행위가 특정 국제 인권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되는 경우. 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이나 아동권리 협약, 장애인 권리협약 등.

호주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진정/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원 제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민원 제기 절차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문의

- 특정 상황에 대해 민원 제기 여부가 가능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호주인권위원회의 민원 정보 서비스(Complaint Information Service)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1300 656 419** 번이나 이메일 complaintsinfo@humanrights.gov.au 로 가능합니다.
- 민원 제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측에서 민원 양식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회측이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 다른 단체 및 개인과 연결해 드립니다.

진정/민원 제기

- 민원 제기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원 양식을 작성하신 후 우편이나 팩스로 저희 위원회에 보내시거나, 웹사이트 (www.humanrights.gov.au)에서 온라인으로 민원 양식을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 민원인의 사용 언어로 민원 양식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양식작성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민원 양식을 작성하는 데 변호사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원회가 고발건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조사

- 위원회에서는 민원 내용 상담을 위해 민원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며,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게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피민원인인 개인이나 단체에 연락을 취하여, 민원인의 민원 내용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이나 관련 정보를 요청합니다. 피민원인들의 답변은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위원회는 경우에 따라 민원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드립니다.
- 위원회는 민원건을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 조정이란 민원인과 피민원인/피민원 단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찾도록 위원회가 도와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은 '조정회의(conciliation conference)' 라고 불리는 대면 만남, 혹은 전화상의 회의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중재인을 통하여 서신, 전화 혹은 이메일의 교환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 민원의 해결 방식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 계약 내용 변경 혹은 보상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법정소송 - 성, 장애, 인종, 연령과 관련된 차별

- 위원회는 불법적인 차별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기타 여러 이유로 진정/민원이 해결되지 않거나 중단되는 경우, 민원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차별 행위 여부는 법정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위원회가 민원건을 종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호주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이나 호주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위원회는 민원인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원인의 소송과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소송 제기를 원하는 경우, 변호사나 법률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정/보고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 III호 차별 및 인권 침해

- 기타 여러 이유로 진정/민원이 해결되지 않거나 중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ILO 협약 제III호와 관련된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장은 양측이 각자의 입장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제공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이 차별행위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건을 연방 법무장관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민원인이 입은 피해나 상해 등에 대한 보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반드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사례를 보시려면, 다음의 위원회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umanrights.gov.au/publications/reports-minister-under-ahrc-act>.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가요?

아래와 같이 호주인권위원회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민원 정보 전화: 1300 656 419 (지역 내 전화)
TTY: 1800 620 241
NRS: 133 677
팩스: (02) 9284 9611

통역이 필요하신 경우, **131 450**번으로 전화하셔서 호주인권위원회로 연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민원인은 TTY 1800 620 241번을 통해 TTY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연결서비스(National Relay Service, NRS)의 133 677번을 통해 위원회로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필요하신 경우 수화 통역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요청 시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우편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GPO Box 5218
Sydney NSW 2001

온라인

이메일: complaintsinfo@humanrights.gov.au
웹사이트: www.humanrights.gov.au

다음 사이트에서 온라인 민원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http://www.humanrights.gov.au/complaints/lodging-your-complaint>.

일반적 법률 상담 서비스

민원 제기를 고려 중이시라면, 법적 자문을 구하시거나 커뮤니티 단체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법률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까운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는 다음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naclc.org.au/directory.

법적 책임: 본 문서는 정보제공을 위한 안내문이며, 법적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